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301호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I 채용분야별 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채용 계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계	남	여	양성		
합 계			204	166	13	25		
공개 경쟁 채용	지 방 소방사	소 방	135	129	6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 경쟁 채용	소 계		69	37	7	25		
	지 방 소방사	구 조	24	24	-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구 급	20	13	7	-		
		예 방	15	-	-	15		
		화 학	2	-	-	2		
		건 축	2	-	-	2		
	지 방 소방교	화재 조사	전기	1	-	-		1
			화학	1	-	-		1
			기계	1	-	-		1
		구급상황 관 리	1	-	-	1		
	지 방 소방경	법 무	2	-	-	2		필기시험 면제 ※ 서류전형(인적성 검사) 및 면접시험

II 시험일정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기간 [취소기간]		(공 통) 2019. 2. 25.(월) 09:00 ~ 2. 28.(목) 21:00 [2019. 2. 25.(월) ~ 3. 6.(수) 21:00]		
		(법무분야) 2019. 4. 29.(월) 09:00 ~ 5. 2.(목) 21:00 [2019. 4. 29.(월) ~ 5. 7.(화) 21:00]		
1차	필기시험	3. 28.(목)	4. 6.(토)	4. 24.(수)
2차	체력시험	4. 24.(수)	4. 30.(화) ~ 5. 2.(목)	5. 8.(수)
3차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포함)	5. 8.(수)	5. 13.(월) ~ 5. 14.(화)	6. 21.(금)
	신체검사	5. 8.(수)	5. 15.(수) ~ 5. 17.(금)	6. 5.(수)
4차	면접시험	6. 5.(수)	6. 12.(수) ~ 6. 14.(금)	6. 21.(금)

※ (법무분야) 원서접수 등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4월 중)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소방본부 시험정보(<http://new119.incheon.go.kr>) 및 인천광역시 시험정보(<http://gosi.incheon.go.kr>)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 공고

III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공개경쟁·경력경쟁채용 공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병역법」 제7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9. 4. 17. 시행 >

- (개정)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 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별표 2)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8. 1. 1. ~ 2001.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8. 1. 1. ~ 1999. 12. 31.

※ 법무분야 :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8. 1. 1. ~ 1996. 12. 31.)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요원, 병역판정검사전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 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연령	1세	2세	3세

다.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붙임 5”)에 의함

라. 거주지 제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공개경쟁채용) ①, ②번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경쟁채용)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공개·경력경쟁채용 공통)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법무분야는 제1종 운전면허소지 여부와 관계없음

○ (경력경쟁채용시험)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구조 (지방소방사)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수색대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해·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p>구 급 (지방소방사)</p>	<p>❖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p> <table border="1" data-bbox="325 383 1423 521"> <tr> <td>▶ 응급의료업무</td> <td>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td> </tr> <tr> <td>▶ 간호업무</td> <td>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td> </tr> </table> <p>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p> <p>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p>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p> <p>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p> <p>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p> <p>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p> <p>⑦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필요)로 근무한 경력</p> <p>⑧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p> <p>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 응급의료업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간호업무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업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간호업무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p>예 방 (지방소방사)</p>	<p>❖ 예방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table border="1" data-bbox="325 1249 1423 1330"> <tr> <td>▶ 예방관련 자격증</td> <td>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td> </tr> </table> <p>▶ 예방분야 인정범위</p> <p>①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방관련 업체 근무경력</p> <p>②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소방분야” 근무경력 및 조사인력(보조) 근무경력</p>		▶ 예방관련 자격증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예방관련 자격증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p>화 학 (지방소방사)</p>	<p>❖ 아래 ①, 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p> <p>① 군 화학분야(연막, 제독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p> <table border="1" data-bbox="325 1727 1423 1807"> <tr> <td>▶ 화학부대</td> <td>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등</td> </tr> </table> <p>② 화학 관련 자격증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p> <table border="1" data-bbox="325 1910 1423 2083"> <tr> <td rowspan="4">▶ 화학 관련 자격증</td> <td>기술사</td> <td>화공</td> </tr> <tr> <td>기능장</td> <td>위험물</td> </tr> <tr> <td>기사</td> <td>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td> </tr> <tr> <td>산업기사</td> <td>화약류제조, 위험물, 생물공학</td> </tr> </table>		▶ 화학부대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등	▶ 화학 관련 자격증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생물공학
▶ 화학부대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등												
▶ 화학 관련 자격증	기술사	화공											
	기능장	위험물											
	기사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생물공학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p>건축 (지방소방사)</p>	<p>❖ 건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table border="1" data-bbox="323 389 1431 600"> <tr> <td data-bbox="323 389 531 443">▶ 건축 관련 자격증</td> <td data-bbox="534 389 691 443">기술사</td> <td data-bbox="694 389 1431 443">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td> </tr> <tr> <td></td> <td data-bbox="534 443 691 497">기능장</td> <td data-bbox="694 443 1431 497">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td> </tr> <tr> <td></td> <td data-bbox="534 497 691 551">기사</td> <td data-bbox="694 497 1431 551">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td> </tr> <tr> <td></td> <td data-bbox="534 551 691 600">산업기사</td> <td data-bbox="694 551 1431 600">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td> </tr> </table> <p>▶ 건축분야 인정범위 ①~③은 ("붙임 9" 참조)</p> <p>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관련 [별표1]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p> <p>②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p> <p>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전문분야 항목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과 설계등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p> <p>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건축관련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채용 후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p> <p>⑤ 소방관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근무경력 및 조사인력(보조) 근무경력</p>	▶ 건축 관련 자격증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 건축 관련 자격증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p>화재조사 (지방소방교)</p>	<p>❖ 당해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p> <table border="1" data-bbox="323 1249 1431 1529"> <tr> <td data-bbox="323 1249 531 1303">① 전기관련</td> <td data-bbox="534 1249 1431 1303">전기과,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td> </tr> <tr> <td data-bbox="323 1303 531 1357">② 화학관련</td> <td data-bbox="534 1303 1431 1357">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td> </tr> <tr> <td data-bbox="323 1357 531 1411">③ 기계관련</td> <td data-bbox="534 1357 1431 1411">기계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td> </tr> <tr> <td data-bbox="323 1411 531 1529">* 유사학과</td> <td data-bbox="534 1411 1431 1529">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8"참조)로 인정</td> </tr> </table>	① 전기관련	전기과,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② 화학관련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③ 기계관련	기계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유사학과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8"참조)로 인정				
① 전기관련	전기과,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② 화학관련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③ 기계관련	기계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유사학과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8"참조)로 인정												
<p>구급상황관리 (지방소방교)</p>	<p>❖ 아래 ①, ②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사람</p> <p>①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계속 근무 중인 구급상황관리사</p> <p>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법무 (지방소방경)</p>	<p>❖ 아래 ①, 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p> <p>①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사법연수원 수료)</p> <p>②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p>												

바.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요건 완성일 및 산정 기준

○ 종류별 요건 완성 기준일

종 류	분 야	요건 완성 기준일
운전면허	공개·경력경쟁채용 공통	최초시험(필기)일
가산점 관련 자격증	공개경쟁채용	최초시험(필기)일 전일
자격(면허)	경력경쟁채용	최초시험(필기)일
경력기간 산정	경력경쟁채용	최종시험(면접)일

※ 자격(면허)는 채용시험 요건 완성 기준일 당시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

○ 경력기간 산정 기준(최근 10년 이내의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함)

- ①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②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신청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 지급방법, 사회보험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③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④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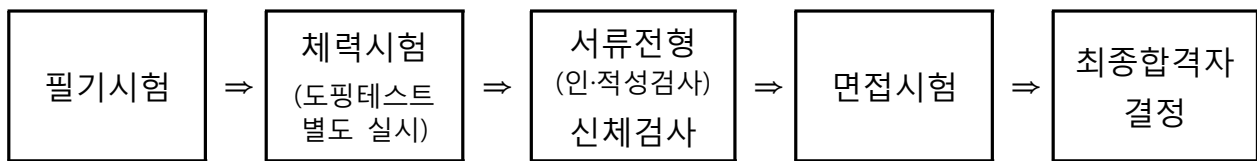
사.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 ①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재직 시 징계사항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 ※ (구조분야)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 (“붙임 10” 참조)
 - 발행기관이 “붙임 10”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당기관 서식 사용 가능
- ②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시 4대보험(건강·연금)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 건강·연금보험으로 선택, 경력기간이 속한 연도 전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 주민등록번호 공개 처리, 과세기간은 경력기간이 속한 연도 전부 발급
- ③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IV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의 진행(소방공무원임용령 제37조)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서류전형에 한하여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공개경쟁 채 용	소 방	필기시험+체력시험+서류전형(인·적성검사)+신체검사+면접시험
	법 무	서류전형(인·적성검사)+신체검사+면접시험
경력경쟁 채 용	구급상황관리	필기시험+서류전형(인·적성검사)+신체검사+면접시험
	그 외 분 야	필기시험+체력시험+서류전형(인·적성검사)+신체검사+면접시험

나. 시험방법

① 필기시험(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 3 및 별표 5)

○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공개경쟁채용 (5과목)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채용 (3과목)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경력경쟁채용 60분(10:00~11:00)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시험 문제지 및 가답안 공개 * “붙임 11” 참조)

○ 선택과목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 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아래 범위 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분 야	소방분야	구조·구급·예방분야	그 외 분야
배 수	1.8배수	2배수	3배수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7] 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붙임 2” 참조)

② 체력시험(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별표 7)

-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 “붙임 3” 참조
- 합격자 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 체력시험에 합격하였어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 도핑테스트 실시

-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핑테스트 실시
- ▶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응시인원의 7% 범위 내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 ▶ 도핑테스트 시행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4” 참조

③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면허)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가 적합한 사람
- 인·적성검사
 - 일정 및 방법은 향후 별도 안내
 -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④ 신체검사(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단, 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3]에 의함(“붙임 5” 참조)

⑤ **면접시험**(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과 2단계(개별면접)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

- **(범무분야)**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구급상황관리분야)**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 면접 시험성적 2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그 외 분야)**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V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9. 2. 25.(월) 09:00 ~ 2. 28.(목) 21:00까지
 - (법무분야) 2019. 4. 29.(월) 09:00 ~ 5. 2.(목) 21:00까지
 - ※ (법무분야) 원서접수 등 세부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4월 중)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위탁업체인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 (<http://icfire.jinhakapply.com>) 직접 접속
 -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new119.incheon.go.kr>) 경유 접속
- 수 수 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수수료 반환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cm× 4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다음단계로 진행됨
- 채용분야별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또는 복수 접수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함(단, 가산특전 부분에 한하여 수정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내(2019. 3. 6.(수) 21:00 / (법무) 5. 7.(화) 21:00)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응시표 출력은 2019. 3. 26.(화)부터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 (<http://icfire.jinhakapply.com>)에서 본인이 출력 가능(법무분야 별도 안내)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VI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가 등 모두 해당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면허증) 가점은 각각 인정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한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모집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한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의 점수를 가산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모집분야별 1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

※ 의사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 담당부서) 등에 직접 확인바람

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때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현황: “붙임 6” 참조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http://icfire.jinhakapply.com>)에서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 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산점 표기 없음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VII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인천소방본부 및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 (인천소방본부) <http://new119.incheon.go.kr> - 소통마당 / 시험정보
 - ▶ (인천광역시) <http://gosi.incheon.go.kr> - 시험정보 / 우리시 시험정보
-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인천소방본부 및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필기·체력·신체검사·서류전형·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시작 30분 전까지(이후 입장 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포기로 간주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원서(사진 포함)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 (<http://icfire.jinhakapply.com>)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나. 필기시험 유의사항

-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순서대로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운영본부에서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하나 불량 수정테이프 사용 및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 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 되며, 발견된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체력시험 유의사항

- 금지약물 복용,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며,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장갑 또는 스파이크 등 체력 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체력시험 중 감독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신체검사 유의사항

-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시하여야 하며, 신체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형 간염(보균자 포함), 색약, 기타 질환자 등은 신체검사 시 진단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채용후보자 미등록,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시험관련 문의

- 문 의 처 : 인천소방학교 교육기획과(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8-13)
- 연 락 처 : 032-930-5927~8
- 홈페이지

▶ (인천소방본부) <http://new119.incheon.go.kr> - 소통마당 / 시험정보

▶ (인천광역시) <http://gosi.incheon.go.kr> - 시험정보 / 우리시 시험정보

◆ 인터넷 원서접수 문의(방법, 응시표 출력, 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 의 처 : (주)진학어플라이
- 연 락 처 : 1544-7715
- 홈페이지 : <http://icfire.jinhakapply.com>

※ (주)진학어플라이 회사 사정상 3일간(2019. 3. 20. ~ 3. 22.) 통화불가

-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1부.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1부.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 3-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4.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 4-1.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 4-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 4-3. 도핑테스트 관련 처리 절차 1부.
- 4-4. 도핑테스트 동의서 서식 1부.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6. 공개경쟁채용 응시자의 가점 적용 자격(면허)증 현황 1부.
7. 임용예정계급의 계급환산 기준표 1부.
8.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서식 1부.
9. 건축분야 인정범위 1부.
10.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서식 1부.
- 10-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부.
11.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문제 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운영 안내 1부.
- 11-1.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편철순서 1부.
- 11-2.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이의제기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 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 3-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악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배근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제자리 멀리뛰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윗몸 일으키기 (회/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p>왕복오래 달리기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4]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의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붙임 4-1]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II.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 4-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붙임 4-3]

도핑테스트 관련 처리 절차

□ 사전준비사항

- 시료채취실(대기실, 행정실, 화장실 등 시료채취 별도 공간) 확보
- 시료채취 책임관 지정(소방위 이상)
- 시료채취 용기(요비중계) 등 준비
- 시료보관용 박스 또는 냉장고 등 준비

□ 처리절차

- ① 채용시험 공고문에 도핑테스트 실시 고지 및 안내(안내문 배부)
- ② 원서접수 시 동의서 징수
- ③ 시험진행절차에 의하여 필기합격자 체력검정 실시
- ④ 도핑테스트 대상자 선정은 **체력시험(전) 공개적으로 선정**

※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체력시험 대상자의 7% 이내

{예: 추천함에서 추천자를 추천한 후 추천자로 선정된 응시자가 추천하는 방식(번호뽑기 등)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 ⑤ 도핑대상자 시료수집책임관과 동행하여 시료채취



시료채취통에 약 90ml 소변 채취

- ⑥ 검사용 용기에 소분



- 1) A병 : 50ml, B병 : 40ml 소분
- 2) 시료봉인후 일시, 장소, 피채취자, 채취자 피채취자 날인이 되어있어야 함

- ⑦ 검사용 용기(A,B)를 봉인봉투에 포장, 발송준비



- ⑧ 소변 채취통에 잔여분으로 뇨비중 검사



- ⑨ 뇨비중 검사후 적정비중(1.005)이하인 경우 시료 재 채취

- ⑩ 채취한 소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택배 배송 및 문서작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마약분석과(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번지)

※ 우체국 택배 이용하며, 아이스팩으로 보냉조치 후 이송

※ 문서작업 : 도핑인원 1인당 1건의 문서 발송(중요)

- ⑪ 처리기한 : 14일(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접수후)

□ 기타사항

- ① 처분 및 이의신청 등

- 비정상분석결과시 응시자에게 서면 통보 및 B시료 검사 등 조치

- 부정행위로 처분 시, 이의신청 제기

- ② 약물검사시 마약류 성분 검출시, 경찰에 수사 의뢰

[붙임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u>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u>
13. 눈	<p>가. <u>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u></p> <p>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p> <p>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p> <p>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p>
14. 정신 계통	<p>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p> <p>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p> <p>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p>
15. 혈압	<p>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p> <p>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p>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6]

공개경쟁채용 응시자의 가점 적용 자격(면허)증 현황

가점비율 분야	5%	3%	1%
①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자동차정비, 화공, 위험물,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소방관련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화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관련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생산자동화, 농업기계, 설비보전, 농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잠수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2급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②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면허)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①+② 합산, 단, 5% 초과 시 5%에 기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비고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

[붙임 7]

임용예정계급의 계급환산 기준표

구분 계급	국가지방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초·중·고등 학교교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원	
소방령 지방 소방령	5급		소령	18~23 호봉	13~18 호봉	11~16 호봉	과장 차장
소방경 지방 소방경	6급 (3년이상)		대위	14~17 호봉	11~12 호봉	9~10 호봉	계장, 대리 (3년이상)
소방위 지방 소방위	6급	경위	중위·소위 ·준위	11~13 호봉	9~10 호봉	7~8 호봉	계장, 대리
소방장 지방 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 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이상)
소방교 지방 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 호봉			평사원
소방사 지방 소방사	9급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비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 채용등 한다.
2. 교육공무원란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 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붙임 8]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대학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년도 졸업	대학원	학과 전공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인천광역시 공고문(2019. 2.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

2019년 월 일

○○대학교 총장 (직인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9]

건축분야 인정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건축사법」 제4조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분야	기술인력	사무실·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설계·사업관리	일반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용역 일반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붙임 10]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기 관 현 황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 력 사 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예시)	근무 형태		
					2014.12.25. ~ 2015.12.22.			
	총 근무기간							
	징 계 사 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Tel)	(Tel)	
	(Fax)	(Fax)	
서 명			

2019년 월 일

_____ 사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소방학교 교육기획과 (☎ 032-930-5927~8, fax 032-930-5999)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1]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문제 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운영 안내

□ 필기시험문제 등 공개

- 공개일시 : 2019. 4. 6.(토) 시험종료 후
- 공개장소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
- 공개내용 : 필기시험 문제지(공채·경채), 가답안(공채·경채)

□ 이의제기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9. 4. 6.(토) 11:40 ~ 4. 7.(일) 24:00
- 신청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
 - * 작성 방법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글등록(작성서식 준수-붙임6)
- 주요내용 : 필기시험 출제문제, 가답안 이의제기
 - * 전화문의 및 기간경과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음

[붙임 11-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편철순서

□ 편철순서

편철 순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 개론	행정법 총론	소방관 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필수과목(3과목)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과목(2과목)

유형	제1선택	제2선택
1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2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3	소방학개론	사회
4	소방학개론	과학
5	소방학개론	수학
6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7	행정법총론	사회
8	행정법총론	과학
9	행정법총론	수학
10	소방관계법규	사회
11	소방관계법규	과학
12	소방관계법규	수학
13	사회	과학
14	사회	수학
15	과학	수학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편철순서

□ 편철순서

편철순서	①	②	③	④	⑤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영어

□ 시험과목

채용예정 계급	채용분야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
지 방 소방사	구조, 구급, 예방, 화학, 건축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지 방 소방교	화재조사(전기, 화학, 기계), 구급상황관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